#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808

발의연월일: 2024. 9. 9.

발 의 자:조경태·서천호·서일준

이헌승 • 박성민 • 조정훈

곽규택 · 김소희 · 김선교

김민전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조가 악화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일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시는 소멸 위기에 처해 있음. 지방도시 소멸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절대적 인구수가 획기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이상 현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정부에서는 지방도시 살리기의 일환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에 주택구입 부담을 경감하여 소비여력이 큰 생활인구 유입 방안을 도모하고있으나, 현행법상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부담이 여전히 존재하고있음.

이에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가격을 한 정하지 아니함)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4도 3촌(4일은 도시생 활, 3일은 농촌생활)과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인구감소지역 등의 경 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2호 신설 등). 법률 제 호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전단 중 "제1호의"를 "제1호 및 제2호의"로 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가격을 한정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비수도권지역등주택"이라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비수도권지역등주택은 제외한다. 제17조제5항제1호 중 "제2호"를 "제3호"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표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과세표준) ① (생 략)	제8조(과세표준) ① (현행과 같
	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	
하는 것으로 본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
	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
	역에 소재하는 주택(가격을
	한정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비수도권지역등주택"
	이라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
	가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비수도권지역등주택은 제외한
	다 <u>.</u>
<u>2.</u> <u>제1호의</u>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	

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 ③ ~ ⑤ (생 략)
- 제17조(결정과 경정) ① ~ ④ (생 략)
  - ⑤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 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 1. 제8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된 주택 중 같은 항 제1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결정과 경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호	의	임대	주택	백 .	또는	같은	<u>-</u>	항
제2	<u>2호</u>	의 7	가정	어ᅤ	린이?	집용	주	택
$\circ$	추	후 .	コ .	요김	<u> </u> 실을	충족	하	기
아	니히	-게	된	경-	우			
2. (	생	략)						

<u>제3호</u>	
) <i>(</i> 처 채 <b>기</b> 가 으 )	

2. (현행과 같음)